

#모두의교육 #함께성장 #통합다층지원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이나는 통합교육#1

포용적미래교육 경기도통합교육 연구회



소개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이나는 통합교육』

📌 선생님,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합교육...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매년 새롭게 만나는 장애 학생, 혹시 실수할까 봐 조심스럽고 헛갈리는 부분이 많아."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권고 사항인지 늘 아리송해."

"바쁜 학교 일상 속에서 통합교육 자료를 일일이 찾아볼 시간은 없고..."

매년 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제 적용까지 크고 작은 고민들을 안고 계십니다. 특히 관련 법령, 용어, 그리고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들은 때로 선생님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지만, 막상 관련 자료를 찾아보려면 너무 전문적이거나 혹은 파편화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 『알쓸신통』, 이러한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아 태어났습니다!

『알쓸신통 -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이 나는 통합교육』은 이런 선생님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통합교육의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담았습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을 넘어, 각 퀴즈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해설을 통해 통합교육 관련 개념, 법적 근거, 교육적 의미까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치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든든한 동료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통합교육 실천의 교실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포용적미래교육 경기도통합교육 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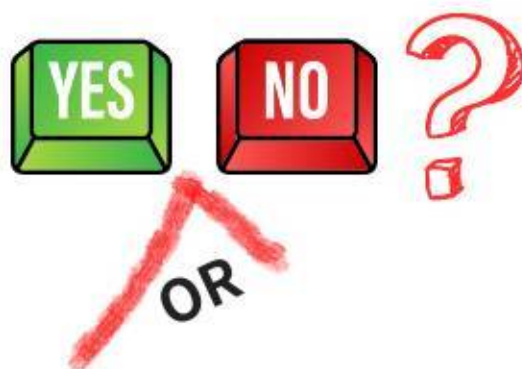
CONTENTS

1. 소개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이나는 통합교육』
2. 알쓸신통 YES/NO 통합교육 10문 10답
 - 특수교육대상자는 모두 장애인일까?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무엇일까?
 - 특수교육대상자는 언제든 특수학급으로 분리시킬 수 있을까?
 - 개별화교육계획(IEP)은 법적 의무사항일까?
 - 수업 목표, 내용, 방법을 수정해서 운영해도 될까?
 - 학생평가는 특수교육대상자도 동일해야 공정한걸까?
 - 활동위주 수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배제하는게 맞을까?
 -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속은 특수학급일까 일반학급일까?
 - 특수학교에 다니도록 안내하는게 더 좋은 학생이 있을까?
3. 연구회 안내



~~YES~~ **NO** 10분 10답

Q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YES/NO 해설 1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1. 통합교육의 개념

통합교육이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같은 교실에서 배우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각자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방식입니다.

2.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에서는 장애학생이 가능한 한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생에게는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교육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합교육은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 개개인의 기본적 권리인 셈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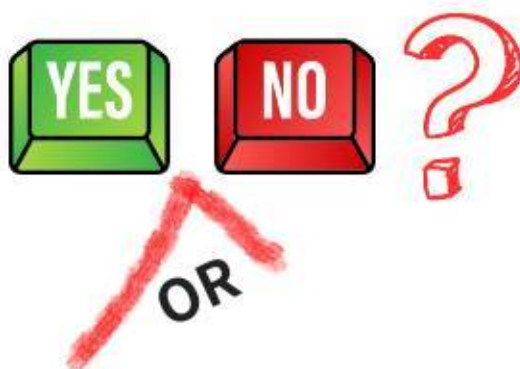
포용교육

학급 내 학생들의 개별 특성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 통합의 대상을 장애학생으로 한정 짓지 않으며, 학급 구성원 모두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통합교육 즉, 포용교육으로 발전하고 있음

~~YES~~ ~~NO~~ 10분 10답



특수교육대상자는
모두 장애인이다.



YES/NO 해설 2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념

특수교육대상자는 반드시 모두 장애인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장애로 인해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자’뿐 아니라 ‘학습부진, 정서 및 행동 문제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교육대상자에는 난독증과 같은 학습장애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도 포함되며, 장애가 있어도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별되지 않습니다.

2. 특수교육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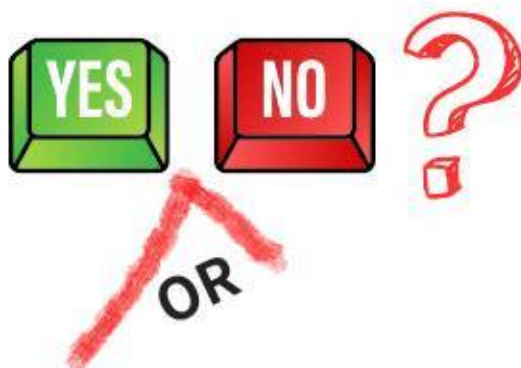
특수교육 대상 선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초기 상담 및 의뢰: 담임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합니다.
- 자료 수집: 학생의 발달 상황, 학습 능력, 건강 상태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 종합적 평가 및 진단: 의료기관, 심리검사, 교육적 평가를 포함해 전문가들이 다각적으로 평가합니다.
- 교육적 판정: 수집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분석하여 특수교육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정 결정 및 통보: 결정된 결과를 학부모 및 학교에 알리고, 이후 개별화 교육계획(IEP)을 수립하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YES~~ **NO** 10분 10답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폭력에 관련될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른다.



YES/NO 해설 3



학교폭력 관련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에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른다.

1.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하여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서 제외되거나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 발생하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배제 조항은 없습니다.

2.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학교폭력 사안 처리시 유의점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인 배려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통 방식 조절: 학생의 이해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맞춰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며, 시각적 자료나 보조기구 활용 등 맞춤형 지원 제공
- 심리적 안정 지원: 사건 사용자의 정서적 불안을 줄이고 심리적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와 협력하거나 적절한 지원 체계 마련
- 공정한 절차 진행: 피해자, 가해자 모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편견이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사건 처리
- 관련 전문가 협력: 특수교육 교사, 상담 교사, 의료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학생의 발달상황을 꼭 고려해야함
- 법적·교육적 요구 준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학생 안전과 권리 보호

~~YES~~ **NO** 10분 10답

Q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업 방해 행동을 하면
일단 특수학급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



YES/NO 해설 4



특수교육대상자가의 분리 지도 시에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교내 분리규정을 따르며, 개별화교육계획을 참고합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 수업 중 수업 방해 행동을 했다고 해서 특수학급으로 분리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통합학급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며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환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통합교육의 기본 취지는 정해진 교육 계획에 따라 일반 학급에서 차별 없이 함께 배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역시 일반학급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수업계획에 따라 수업이 운영되므로 규정이나 계획에 따르지 않는 학생 분리는 불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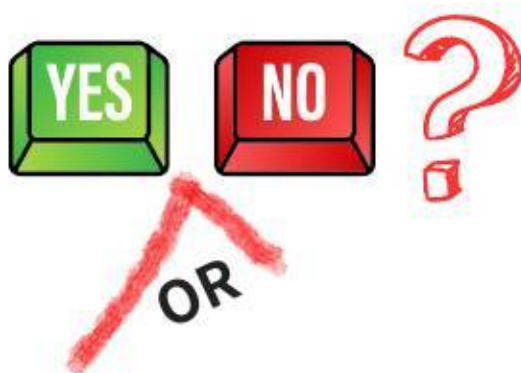
2. 수업 방해 행동에 대한 대응 방법

수업 방해 행동이 있을 경우에도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교내 규정(분리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규정 안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분리지도와 관련하여 해당 학생의 문제행동 원인과 필요를 파악해서 행동 지원 계획을 세우고, 개별화교육계획(IEP)을 기반으로 적절한 상담과 지원, 교실 내 행동 개선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업 방해 행동을 단순히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학생의 발달 특성과 필요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YES~~ NO 10분 10답

Q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IEP)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YES/NO 해설 5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개별화교육계획(IEP)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1. 개별화교육계획(IEP) 근거 및 의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IEP)은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발달 상황과 학습 진전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개별화교육계획(IEP) 내용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학생의 인적사항, 현재 학습수행 수준, 교육목표, 교육 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 수렴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일관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YES~~ **NO** 10분 10답



학생의 수업 참여를 위해
교육 목표, 내용, 방법을
수정해서 운영해도 된다.



YES/NO 해설6



학생의 수업 참여를 위해
교육 목표, 내용, 방법을
수정해서 운영해도 된다.

1. 교수적 수정은 학생의 수업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학생의 수업 참여를 위해 교육 목표, 내용, 방법을 수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의 핵심 원리이자 교육적 의무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IEP)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서도 학생의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교수적 수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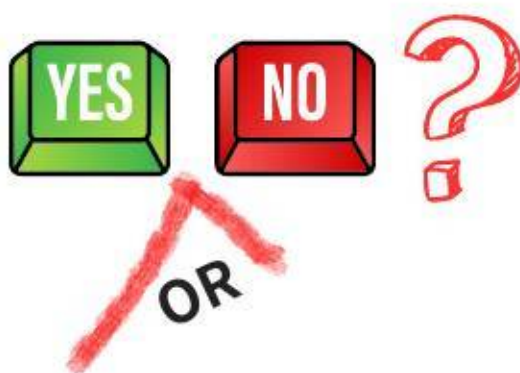
- 교육 목표 수정: 학생의 현재 수준과 발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달 가능한 목표로 조정
- 교육 내용 수정: 난이도 조정, 내용 축소 또는 확장, 대체 활동 제공 등
- 교육 방법 수정: 다양한 교수법 활용, 보조공학기기 활용, 또래 지원 활용 등
- 평가 방법 수정: 대안적 평가 방법, 시험 시간 연장, 평가 형식 변경 등

이러한 수정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적 접근입니다. 특히 보편적 학습설계(UDL) 관점에서는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 수업 설계가 모든 학생의 학습 참여와 성취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강조됩니다.

~~YES~~ **NO** 10분 10답



**학생평가는
특수교육대상자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실시해야 공평하다.**



YES/NO 해설 7



학생평가 또한 학습 내용에 기반하여
학생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수정 및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평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춰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방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평가는 개별화교육계획(IEP)의 내용과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 역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며, 장애를 가진 학생의 잠재력과 학습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 평가 수정 및 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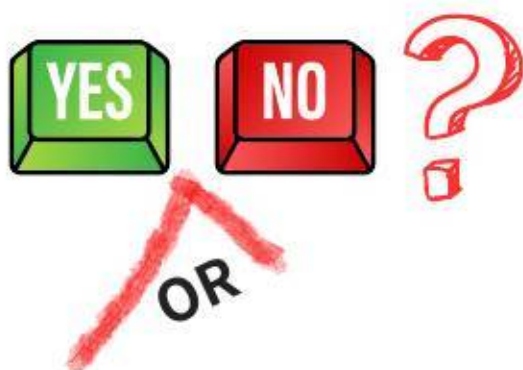
- 시간 연장: 시험 시간을 더 충분히 제공
- 환경 조정: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평가 실시
- 방법 변경: 서술형 대신 구술 평가, 필기 대신 컴퓨터 등 보조 기기 활용
- 문항 수: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복잡한 지시문 단순화
- 보조 인력 활용: 문제 이해를 돕는 보조 인력이 함께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맞춤형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가르친 것을 평가한다는 관점에도 부합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YES~~ NO 10분 10답



**체육대회나
현장체험학습처럼 활동 위주
수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하지 않도록 배려하는게 좋다.**



YES/NO 해설 8



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처럼 활동 위주 수업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은 모든 수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학교 내 어떠한 활동에서도 배제는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체육대회나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특별활동은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신체 활동 증진, 교우 관계 형성,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도 이러한 경험은 비장애학생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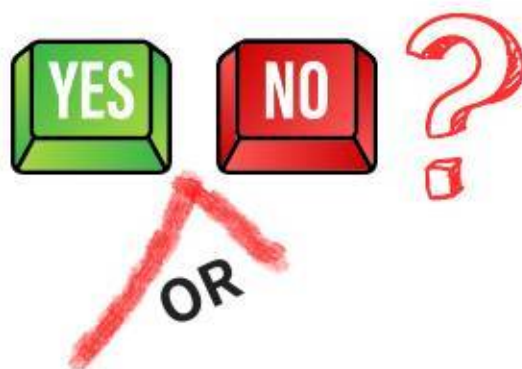
다만, 보조인력지원 등 학생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2. 다양한 접근 방법

- 수정된 규칙: 활동의 규칙을 학생의 능력에 맞춰 단순화하거나 변경
- 역할 분담: 학생이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합한 역할이나 과제 부여
- 보조 도구/기기 활용: 필요한 경우 특수 보조 도구나 장비를 사용
- 대체 활동: 유사한 교육 목표를 가진 대체 활동을 제공
- 적극적인 의사소통
- 활동 전 친구들에게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이해하고 돕는 방법에 대해 교육

~~YES~~ ~~NO~~ 10분 10답

Q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속은 특수학급이다.



YES/NO 해설 9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속은 통합학급,
특수학급 모두 입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도 똑같은 우리반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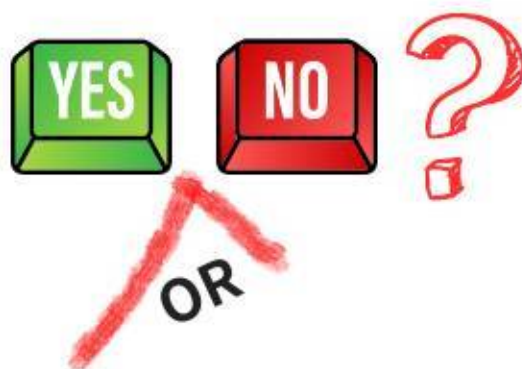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속학급은 특수학급 뿐만 아니라, 학생이 배정된 일반학급(통합학급)입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수학급에서 특정 교과나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담임교사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2명 입니다. 따라서, 담임교사 간 소통과 협력은 필수요소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내 반 아이라는 생각으로 지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통합교육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협력시스템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대부분 개인 간 친분에 따라 협력의 정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하여 학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연구회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YES~~ **NO** 10분 10답

Q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특수학급보다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이 더 좋다.



YES/NO 해설 10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의 결정은 타인이 결정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1.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 필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특수학급이 더 좋다'거나 '특수학교가 더 좋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학생의 장애 특성과 정도, 교육적 요구, 성장 환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가능한 한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일찍부터 비장애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사회성을 기르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차이

특수학급 (일반학교 내): 일반학교 내에 설치되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급에 소속되면서, 필요한 경우 특수학급에서 개별화된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형태입니다. 학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비장애 또래들과 함께 보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고, 특수학급에서는 개별화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특수학교: 특정 장애 유형이나 중증 장애 학생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규모 학급 운영과 전문적인 시설 및 인력을 통해 학생의 개별적인 욕구에 깊이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두의 참여로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는

포용적 미래교육 경기도통합교육 연구회

다르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의 교실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그리는 미래교육

2021년, 저희 연구회는 '경기도 보편적 학습설계(UDL) 미래교육연구회'로 첫 발을 내딛어 모든 학생이 각자의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환경에 탐구와 실천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모두를 위한 수업', '포용의 교실'이라는 비전으로, 연구회 명칭을 '포용적 미래교육 경기도 통합교육 연구회'로 개정했습니다.

이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합교육의 가치**를 확산하며, **모두가 교육의 진정한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을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연구와 실천

연구회에서는 모든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수업 설계(UDL)**, 긍정적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예방적 생활지도(PBS)**,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와 사회성 발달을 위한 **사회정서학습(SEL)**,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MTSS)** 시스템을 탐구, 실천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초청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의 **멘토링 상담**, 정기적인 **책모임**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 공유, **지역별 소모임**을 구축하여 현장의 자발적인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연수
- 멘토링상담
- 토토월책모임
- 지역별소모임

연구회에 함께해요

* 문의 : GOE 메신저 - 마지초 교사 김수희(회장) * 연구회 소식 및 자료 :

